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1408
------------	------

2020년 4월 23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3일, 정지권 의원 외 9명 발의

나. 회부일자 : 2020년 4월 8일

다. 상정일자

- 제293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교통위원회(2020년 4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정지권 의원)

가. 제안이유

- 현행 가로변 정류소에 정차하는 시내버스는 대부분 1대이상 정차하여 승객을 태우는 경우가 많음. 현행 조례상의 버스 '정차범위' 10미터는 버스 크기(전장 약12미터) 등을 고려할 때 너무 협소하게 선정되어 버스 승차를 위해 대기하는 시민들이나 운전원들에게 동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정차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승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으며

- 가로변 정류소와 맞물려 설치된 화단들로 인하여 정류소에 정차하지 못한 버스에서 하차하는 승객들의 안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 현행 가로변 버스정류소로부터 20미터 가량은 화단을 없애고 보도를 설치 하므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는 여건 개선하고자 함
- 현재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버스정류소에서 대기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흑한과 흑서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을 다양하게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어 이를 서울시에서 규격화하고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하고자 제한함

나. 주요골자

- 시내버스 정차범위를 '10미터'에서 '20미터'로 확대(안 제2조제4호가목)
- 정류소 설치 기준에 흑서 및 흑한을 피할수 있는 시설을 포함(안 제5조제1항제6호)
- 정차범위내 시설물 설치 제한 사항에 가로변 화단을 추가(안 제6조 제1항제6호)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0. 4. 13 ~ 4. 21
- 의견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동의

- 동 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 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과 운전자의 안전 확보 및 편의제공을 위해 정차범위 확대, 정차범위 내 가로변 화단 제거, 후서 및 후한에 대비한 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조항을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에 신설하는 사항으로 교통약자와 일반시민의 안전과 편의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동의함
- 조례 개정(안)의 목적달성(시내버스 정류소의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충분한 사업예산 확보와 단계적·장기적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검토보고 요지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 이용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정류소 정차범위 확대, 흑서 및 흑한을 피할 수 있도록 정류소 설치 및 운영기준 마련, 그리고 정차범위내 설치 제한 시설물에 ‘가로변 화단’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임

■ 시내버스 정차범위 확대 관련(안 제2조제4항의 가목 관련)

- 동 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 정차범위를 현재 보도에 설치된 표지판 또는 승차대로부터 “10m이내”로 되어 있는 사항을 “20m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동 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 정차범위를 현재보다 2배 확대함으로써 정류소 주변에서 대기하는 시민의 대기공간 확보, 승하차시 안전사고 예방, 정류소 주변 보행권 확보 등 시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동 구간에는 현행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내버스 승하차를 방해하는 시설물 등의 설치가 제한됨으로써 시내버스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정차범위가 넓어질 경우 정차범위 내에서 버스 운전자 재량에 의해 정차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 및 노약자 등의 이동거리가 증가될 우려가 있고, 시내버스가 한 정류소에서 2회 이상 정차가 필요해 운행시간이 길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정책

집행과정에서는 이에 대해 보완이 필요할 것임

- 참고로 서울시 시내버스 정류소 정차범위 관련 서울시 규정 변경현황을 살펴보면 '02년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1)'으로 '정류소 표지판 전후 10m'로 규정하였고, '16년에는 가로변정류소와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로 나누어 정차범위를 선정하였으며2) 18년에는 '16년에 공고한 정류소 정차범위를 유지하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3)을 반영하여 정류소에 승하차할 승객이 있을 경우 시내버스가 정류소 정차범위를 준수하도록 보완되었음4)[별첨 참고]

이후 '19년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가 제정·시행5)되어 정류소 정차범위에 대해 제도적 규정이 마련되었고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음

■ 정류소 운영기준 및 설치 제한 사항 관련(안 제5조 및 제6조 관련)

- 동 개정조례안은 혹서 및 혹한에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정류소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혹서 및 혹한을 피할 수 있는 정류소 설치를 추진하고6) 있고, 대중교통 이용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 중 하나가 기후여건이라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1) 관련근거 : 대교 - 91120호(2002.2.7.)

○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전후 10m, 도로경계석으로부터 50cm이내 정차범위 위반시 행정처분

2)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093호(2016.10.27.서울시보 제3376호)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준수사항) 제1항제6조

-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4)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416호(2018.6.14.서울시보 제3569호)

5)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7168호, 2019. 5. 16 제정 및 시행

6) 2020년 버스정책과 예산편성 내역

- 버스정류소 온열기능 의자 시범설치 90백만원, 버스정류소 추위대피소(온기텐트) 시범설치 190백만원

편의를 대폭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동 기능을 갖춘 정류소 설치를 위해서는 전원, 보도여건 및 재원 등의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하고, 자치구별로 흑서 및 흑한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의 보편적인 형태와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 차원의 표준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동 개정조례안에서 정류소 정차범위 내 설치하지 못하는 시설물의 항목에 ‘가로변 화단’을 추가하는 것은 정류소 승하차시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 특히 하차시 예상치 못한 장애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임

[별 첨] - 정류소 정차범위 변경사항

적용시점		정류소 정차범위
'02년2월7일		○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전후 10m, 도로경계석으로부터 50cm이내
'16년 10월 27일	가로변 정류소	○ 정류소 정차기준 - 도로경계석으로부터 50cm 이내 · 표지판이나 승차대 설치 위치를 기준으로 하며 표지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함. 도로에 정차면(정차위치 박스)이 표시된 경우 정차면까지 정차 범위에 포함 · 승차 승객을 위해 차량 앞부분이 정차 기준에 위치 (모든 차량은 정차 기준을 통과해야 함)
	중 양 정류소	○ 정류소 정차기준 - 중앙정류소 정차 범위는 바닥 정차면 공간임.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 전체가 정차 범위내 위치
'18년 6월 14일	가로변 및 중앙 정류소	○ '16.10.27.과 동일하나 승하차할 승객이 있을 경우 정차범위 적용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10미터”를 “20미터”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시내버스정류소는 혹서 및 혹한에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가로변 화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정차범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 보도에 시내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승차대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단, 표지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10미터 이내인 곳</p> <p style="padding-left: 20px;">나. (생략)</p> <p>제5조(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p> <p>① 정류소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1~5.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u><신설></u></p> <p>②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 -----<u>20미터</u>----- ----- -----<u>20미터</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현행과 같음)</p> <p>제5조(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p> <p>① ----- -----</p> <p style="padding-left: 20px;">1~5.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u>6. 시내버스정류소는 흑서 및 흑한에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6조(정차범위 내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p> <p>① 정차범위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5. (생략)</p> <p><u><신설></u></p> <p><u>6.</u> (생략)</p> <p>② (생략)</p>	<p>제6조(정차범위 내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p> <p>① ----- ----- -----</p> <p>1~5. (생략)</p> <p><u>6. 가로변 화단</u></p> <p><u>7.</u> (현행 제6호와 같음)</p> <p>② (생략)</p>